

[부정경쟁분쟁] Trade Dress 모방방지 규정 명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

법률 개정법



영업장소의 트레이드드레스 Trade Dress 모방방지 규정 명시화 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

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

표시하는 표지"에 괄호로 "(상품 판매 ·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· 외관 · 실내장식

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)"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, 다목에서도 타

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"에 괄호로 "(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

상품 판매 ·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· 외관 ·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

인 외관을 포함한다)"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. 아래 색깔로 표시한 부분입니다.

나.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표장(標章),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(상품 판매·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·외관·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)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

다.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상품의 용기·포장,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(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·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·외관·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)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·반포 또는 수입·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

살펴보면, (1) **국내에 널리 인식된**(주지성 요구), (2) 타인의 상품 판매·서비스 **제공방법**(비즈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 영역), (3) 또는 **간판·외관·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**(영업장소의 실내, 실외 인테리어 등 외관 표현)과, (4) **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** (5) 타인의 **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**하게 하는 행위(제2조제1호나목), 및 (6) 타인의 **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**하는 행위(제2조제1호다목)를 각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영업제공 장소의 간판·외관·실내장식 등 전체적인 외관을 트레이드드레스(trade dress)로 볼 수 있는데, 타인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한 혼

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율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합니다. 나아가 영업
출처의 혼동이 없더라도 타인의 표지 식별력이나 명성에 손상이 가는 행위도 부정경쟁행
위로 규율합니다.

트레이드드레스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,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구
제 뿐만 아니라 형사적 구제로서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형사처벌 대상: 부경법 제18조(벌칙) – 나목 및 다목 부정경쟁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함

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처한다. [개정 2013.7.30, 2017.1.17, 2018.4.17] [[시행일 2018.7.18]]

1. 제2조제1호(아목,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)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

기술유출, 업무상배임, 경업금지, 전직금지, 영업비밀, 형사고소, 민사소송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